

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2684 (2024. 05. 03.) (유효기간: 2024. 06. 03. ~ 2026. 06. 02.)

NH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 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 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NH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특징 :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병역의무복무자 맞춤형 고금리 상품으로 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 제공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u>실제계약 내용은</u> 약관 및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작성기준일 : 2024. 5. 2.)

구 분	내 용
	■ 가입 시점 아래 ①,②,③를 모두 충족하는 의무복무이행자 중 병 급여체계 적용 대상 병사 개인 (1인1계좌)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대상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 1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자격확인서류 「 <u>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원본</u> 제출 ※ 비대면 신규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앱"에서 발행한 금융 분산ID 방식 가입자격증명서가 당행 비대면 앱 [*] 에서 확인된 경우 가입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상) * NH스마트뱅킹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경우
	※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기타 의무복무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는 가입대상이 아님.
상품유형	자유로우대적금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비대면 채널(NH스마트뱅킹)에서 가능 ■ 해지 : 영업점에서 가능



	■ 시규가인 시	있글 치저글애 으 1 0	워 이삿이며 이ㅎ エ	H추근앤으 매히 1마의
가입금액	■ 신규가입 시 입금 최저금액은 10원 이상이며 이후 저축금액은 매회 1만원 이상,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2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가능 ※ 단, '장병내일준비적금'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한 고객의 최대 저축 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20만원까지 저축가능			
계약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월, 일 단위) ※ 적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예정일(또는 소집해제예정일)이며, 단축·연장 불가 ※ 가입대상 中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36개월이므로 만기일이 소집해제예정일이 아닐 수 있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1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본이자율 (연%, 세전)	※ 농협인터넷빙		은행>예금금리안내>적	립식 일의 고시금리에 따름 15개월 이상 ~ 24개월 이내 5.00
■ 최고 0.5%p ※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 해지 시 우대이자율 제공 (예시) 계약기간이 5개월 이하이고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자율 미제공 우대이자율 우대이자율			영우 우대이자율 미제공 우대이자율	
(연%p, 세전)	(적금 가입월~만기 전전월말)은행에서 발급한 NH농협 개인 신용·체크카드(채움) 월평균 10만원이상 이용실적 ————————————————————————————————————			0.20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구)청년우대형주택종합저축) 포함) 0.30 가입 및 5회이상 납입실적과 보유			
	(카드 이용실적은 승인실적 기준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가입한 계좌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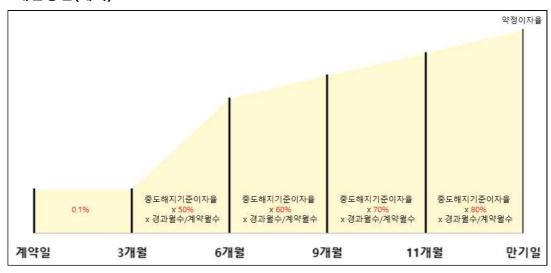
■ 자유로우대적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경과기간적용이율/적용률3개월 미만0.16개월 미만중도해지 기준이율 × 50% × 경과월수 ÷ 계약월수9개월 미만중도해지 기준이율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11개월 미만중도해지 기준이율 × 70% × 경과월수 ÷ 계약월수11개월 이상중도해지 기준이율 × 8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중도해지이자율 (연%, 세전)

- 중도해지이자율 : 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 넷째자리에서 절사)
 - 중도해지 최저이자율은 0.1%
 - 중도해지 기준이자율 : 예금가입일 당시 고시된 자유로우대적금 기본이자율
 -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월 미만 일수는 버림

■ 계산방법(예시)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 ※ 위 그림은 중도해지기준이자율, 경과월수, 계약월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자 산출방법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자가 아닙니다.

■ 자유로우대적금 만기후이자율 적용

만기후이자율 (연%, 세전)

경과기간	적용이율	경과기간	적용이율
만기 후 1년 이내	만기시점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의 1/2	만기 후 1년 초과	보통예금 이자율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농협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단, 만기일 이후 금리가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는 변동된 만기 후 이자율 적용)



만기이자 산출근거	입금 건별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이자를 합계 [입급건별 이자계산 산식(예시)] 입금금액×약정이자율×일수(회차일~만기일 전일)/365 1의치 2의치 3의차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는 불가하며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은 가능
부분인출	■ 불가
재예치	■ 불가
자동이체	 자동이체 출금계좌가 타행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동이체 신청해야 하며, 타행자동이체는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 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월 한도 제한 상품으로 매월 말일로 자동이체 설정 시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됨에 따라 다음 달 첫 영업일에 입금되어 해당 월 입금이 누락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일 자동이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상품: NH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 타행 자동이체 등록: 매월 말일, 월 20만원(최대한도) '24. 3. 31.(일) 자동이체 미처리, 4.1.(월) 자동이체 처리 → 이후 자동이체 처리일자 5.31.(금) → 3월 미납된 금액은 소급 적용 불가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 만기앞당김 해지 시 비과세 적용불가 및 1% 이자지원금 지원불가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40	14	NH	농협	은행
4	"			
Ė				
https://banking. nonghyup.com				
ngt.		i a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최고 5천만원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비과세 상품 - 상품 계약기간 만료 후 이자는 과세되며, 상품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법령에 따름
부가서비스	■ 군복무 기간 중 'NH농협손해보험 단체상해보험 내 군인(병) 영외 체류 기간 중상해 특별약관'에 대한 무료가입 서비스 제공 - 대상: 신규가입 초입금 20만원(보험금 청구 시 적금 매달 1만원이상 납입실적 有) - 보험보장금액: 1천만원 - 보험개시 및 기간: 적금 가입 다음날 00시부터 전역(소집해제)전일까지 - 보장기간 및 범위: 군 복무 기간 중 영외 체류 기간동안 상해 발생 시(영외 체류는 휴가나 외박, 외출에 해당되며 군복무에 의한 영외체류는 제외)



3 1% 이자지원금

- ☞ 지급에 관한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123/612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 042-481-30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1% 이자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 되는 장려금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금액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실제 예치일수 : 입금일 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 단, 1% 이자지원금은 '23.12.31.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
과세여부	■ 비과세
지급대상	■ 이 적금의 가입자(예금주)로서 아래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만기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 ※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진 경우 포함 ③ 적금계좌 만기해지 시 전역증・병역증・병적증명서・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만 가능) 원본제출
알아두실 사항	 ● 중도해지 계좌는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 해지 시 전역증・병역증・병적증명서・복무사실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 이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만기해지 시 반드시해당 서류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기 시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예금주는추후 은행에 '1% 이자지원금'을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 '21.10.14.「병역법」개정 시행에 따른 1% 이자지원금 지급으로 해당일이전 전역 및 소집해제 된 장병에 대한 1% 이자지원금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이 적금은 과세특례를 전제로 출시한 상품이므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 이자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1% 이자지원금은 '23.12.31. 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4 매칭지원금

- ☞ 지급에 관한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123/612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 042-481-30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매칭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 되는 장려금으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납입 당시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 청에서 직접 지급
지급금액	 ※ 매칭지원금 지급급액 - '22.1.1. 이후 납입분 : (원금 + 이자 + 1% 이자지원금)의 33% - '23.1.1. 이후 납입분 : (원금 + 이자 + 1% 이자지원금)의 71% - '24.1.1. 이후 납입분 : 납입원금의 100%
과세여부	■ 비과세
지급대상	■ 이 적금의 가입자(예금주)로서 아래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만기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 ※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진 경우 포함 ③ 적금계좌 만기해지 시 전역증・병역증・병적증명서・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만 가능) 원본제출 ※ 1% 이자지원금 지급조건과 동일하나, 매칭지원금은 만기해지 시 은행에 제출한 농협은행 본인명의 입출식 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지급(최대 1개월 소요)
알아두실 사항	 ■ 중도해지 계좌는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 해지 시 전역증・병역증・병적증명서・복무사실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 해지하는 경우 매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칭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만기해지 시 반드시해당 서류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기 시 해당 서류를 미제출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예금주는추후 은행에 매칭지원금을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 '22.01.01. 「병역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매칭지원금 지급으로 해당일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했던 금액의 소급적용은불가합니다. ■ 이 적금은 과세특례를 전제로 출시한 상품이므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매칭지원금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이 적금은 'NH농협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 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의 해지 시 보험계약도 자동 해지됩니다.
- 보험 무료가입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손해보험 약관의 정한 바를 따르며, 농협은 한과 NH손해보험과의 계약에 따라 보험서비스는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보험의 보장내용 관련 약관은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NH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확인 가능하며, NH손해보험 콜센터로 요청시 Fax나 E-mail도 제공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 요청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및 NH손해보험 콜센터(☎ 1644-9000)에서 가능합니다.
- <u>**우대서비스/우대금리의 기준실적**</u> 또는 <u>**납입한도**</u> 산정 시 급여이체, 자동이체, 카드대금결제 등을 포함한 <u>**자동입출금거래**는 <u>**신청일에 상관없이 실제거래가 발생한 날의 해당월을 기준**</u> 으로 합니다.</u>
 - 신청일이 월말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의 사유로 실제거래가 익월에 발생하면 익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king.nonghyup.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개발부서: 개인고객부)



〈별지〉「NH장병내일준비적금」적립식예금 연계·제휴서비스

구 분	내 용	비고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군복무 기간 중 'NH농협손해보험 단체상해보험 내 군인(병) 영외 체류 기간 중 상해 특별약관'에 대한 무료가입 서비스 제공 ① 가입대상 - 신규가입 초입금 20만원 가입자 ② 보장내용: 1천만원 - 보험금 청구 시 매월 1만원 이상 적금 납입실적 필수 ③ 보험개시 및 기간 - 적금 가입 다음날 00시부터 전역(소집해제)전일까지 ④ 보장기간 및 범위 - 군복무 기간 중 영외 체류기간의 상해 - 영외체류는 휴가나 외박, 외출에 해당 - 경복무에 의한 영외 체류는 제외되며 연장복무 기간도 해당없음 ※ 적금의 해지 시 보험계약도 자동해지 ※ 보험금 지급 요청은 가까운 농협은행 방문 및 NH 손해보험 콜센터(1644-9000)으로 문의	
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	• 농협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 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 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연계·제휴서비스 제공기간	• 적금 가입 다음날 00시부터 전역(소집해제)전일까지 군복무 기간 중 영외 체류기간(휴가, 외박, 외출)의 상해에 한함 (단, 예금 가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금 중도 해지시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중단)	
연계·제휴서비스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서면,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개 이상의 방법 으로 축소·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 단,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또는 연계· 제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의 일방적인 제공 중단 등 6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고지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조건	• 예금 신규 시 연계·제휴서비스 가입신청 • 단체보험 관련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불필요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